

문서번호	생활보건과-4519
결재일자	2015.2.26.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보건기획관

2015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2015. 2.

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 참여 고려 사항	● 시민 : 유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무 ■
	● 전문가 : 유 □ () 무 ■
	● ombudsman : 유 □ () 무 ■
법령 및 기타 고려 사항	● 법령 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예시 : 공중위생관리법) 무 □
	● 기타 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 자원 의 활 용	● 중앙부처 : 유 □ () 무 ■
	● 민간단체 : 유 ■ (공중위생관련협회) 무 □
	● 기업 : 유 □ () 무 ■
관계 기관 및 단체 협의	● 관계 기관 : 유 □ () 무 ■
	● 민간 단체 : 유 □ () 무 ■
	● 시 산 하 기 관 : 유 ■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무 □
언론 홍보 계 획	● 홍보 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없음 ■

목 차

I	추진근거 및 관리체계	1
II	추진방향	2
III	현 황	2
IV	2014년 사업실적 및 개선방향	5
V	2015년 사업목표	9
VI	세부추진계획	9
	1. 시민과 함께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9
	2.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	11
	3. 시민에게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	12
	4. 평가계획	13
	5. 월별 추진일정	14
VII	최근 법령 개정사항 안내	14
VIII	행정사항	15

2015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 및 서비스 수준 평가,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실시하여 위생수준향상을 통한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I 추진근거 및 관리체계

추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 위생처리업의 위생 관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2호)
-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9호)

관리체계

서울시 생활보건과

- 종합 계획 수립 및 자치구 시달
- 분기별 실적관리 및 사업평가
- 타사업연계한 통합관리추진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보건소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 세부 계획수립 및 시행
- 분기별 실적보고
- 업소 별 지도점검
- 공중위생업소서비스평가시행및공표
- 업소 자율점검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업소(업주)

- 자율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서울시 및 자치구 지도점검 시 적극 협조
- 업소 위생관리 기준 준수

II 추진 방향

- 민·관 합동 구간 교차점검으로 행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시민(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하는 투명 행정 실현
- 위생 사각지대 및 시민생활 불편사항 중점관리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공표를 통한 우수업소에 대한 정보제공
- 찾아가는 실내공기질 측정과 원인별 개선방법 안내로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

III 현 황

■ 공중위생업소

(2015.1.1. 기준, 단위 : 개소)

합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37,837	3,323	1,100	2,992	21,379	5,912	3,079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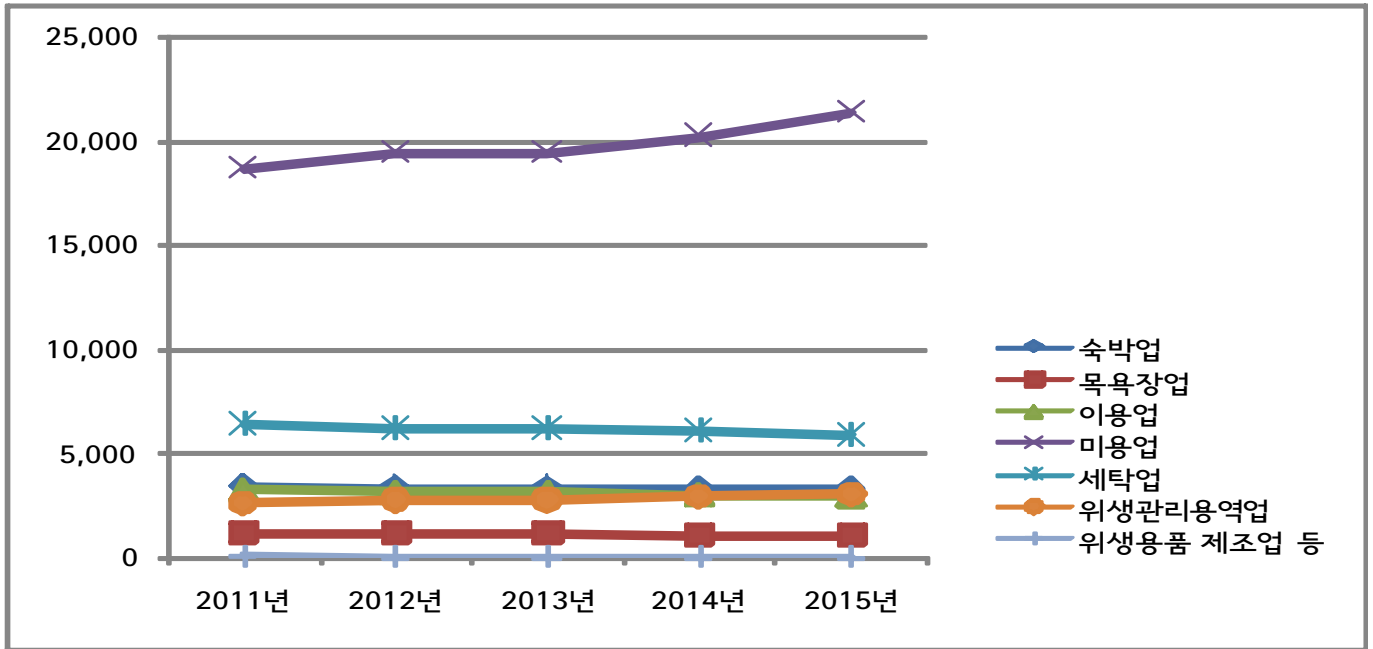
■ 공중이용시설

(2015.1.1. 기준, 단위 : 개소)

합 계	업무시설 (3,000㎡이상)	복합건축물 (2,000㎡이상)	공연장 (1,000석 이상)	학 원 (2,000㎡이상)	혼인예식장 (2,000㎡이상)	실내체육시설 (1,000석 이상)
7,849	1,591	6,034	34	98	75	17

■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변동 추이(최근 5년간)

연도	합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15	37,837	3,323	1,100	2,992	21,379	5,912	3,079	52
'14	36,886	3,338	1,134	3,033	20,265	6,101	2,963	52
'13	36,345	3,376	1,180	3,154	19,491	6,267	2,822	55
'12	36,345	3,376	1,180	3,154	19,491	6,267	2,822	55
'11	35,915	3,470	1,226	3,298	18,728	6,443	2,689	61



〈 최근 5년간 업종별 변화추이 〉

▲ 증가업종 : 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

- 미용업 :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미용서비스 이용 수요 증가 및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에 따른 미용업의 세분화(일반, 피부, 손발톱 등)
- 위생관리 용역업 : 대형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청소대행업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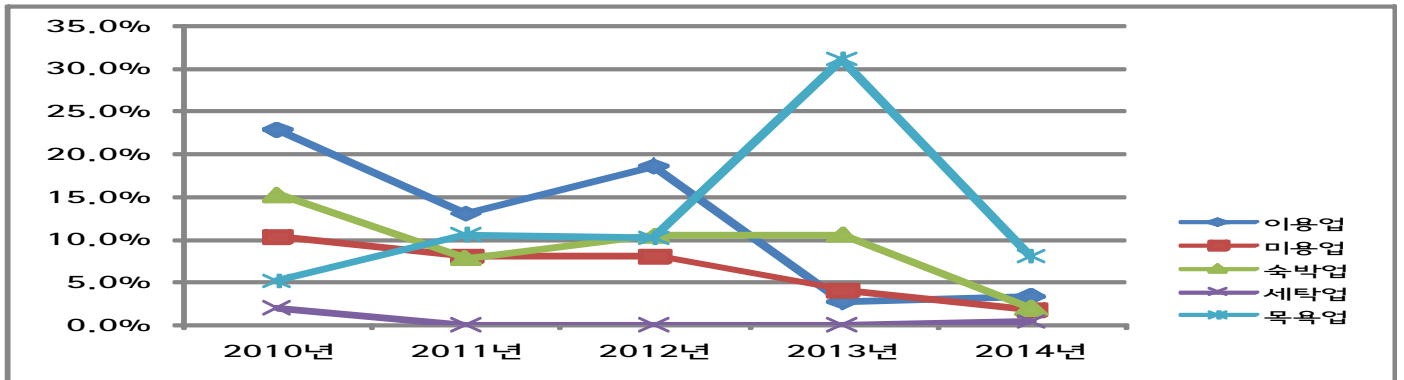
▼ 감소업종 : 숙박, 목욕, 이용, 세탁 등

- 숙박업 : 영세업소 수익감소 및 소비자의 서비스 욕구상승으로 리모델링 등 시설개수비용의 부담으로 업종 전환
- 목욕장 : 대형화(찜질방 등)로 소규모업소의 경쟁력 저하, 가정 내 목욕 시설완비 등으로 인한 이용 감소
- 이용업 : 남성들의 미용실 이용 증가와 이용실에 비해 취약하고 노후된 시설로 인한 이용 남성 감소
- 세탁소 : 대형화, 프랜차이즈 영업 확산, 빨래방 등 신종 업종 생성으로 영세업소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최근 5년간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점검 현황

(단위 : 개소)

업종 연도	총계		이용		미용		숙박		세탁		목욕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2014	2,358	50	180	6	1,446	26	356	7	251	1	125	10
2013	2,257	114	259	7	1,528	62	133	14	237	0	100	31
2012	748	61	27	5	372	30	96	10	96	0	157	16
2011	893	69	108	14	372	30	192	15	126	0	95	10
2010	835	97	101	23	300	31	237	36	100	2	9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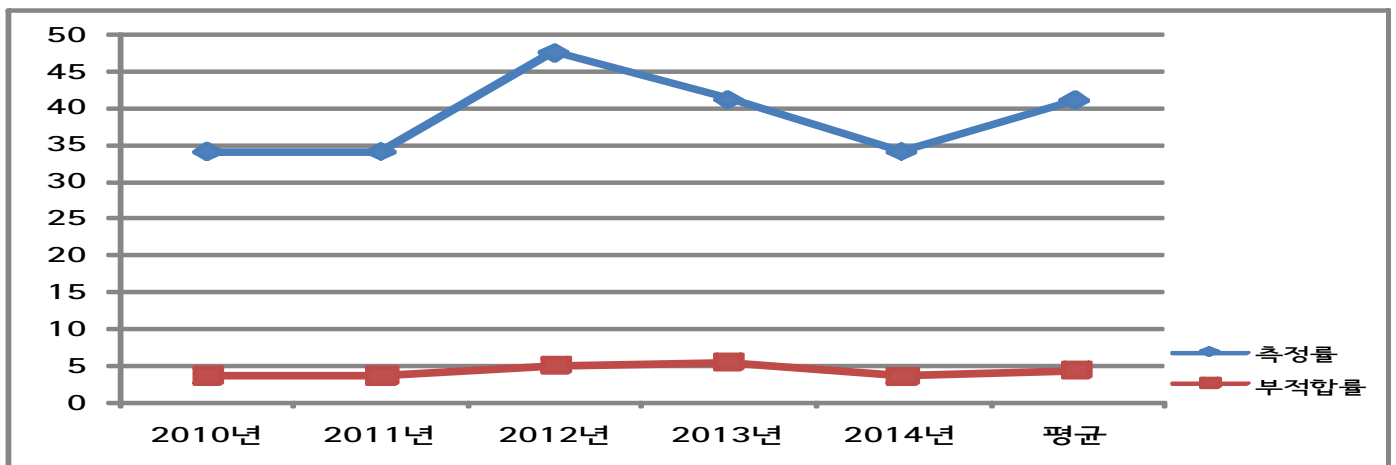


〈 연도별 위반율 〉

최근 5년간 공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 현황

(단위 : 개소, %)

측정 연도	총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상시설	6,935	7,238	7,402	7,409
측정시설 (측정률)	14,876 (41%)	2,364 (34)	3,374 (46.6)	3,518 (47.5)	3,045 (41.1)	2,575 (34)
부적합시설 (부적합률)	653 (4.4%)	87 (3.7)	128 (3.79)	177 (5.03)	168 (5.5)	93 (3.6)



IV 2014년 사업실적 및 개선방향

1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14년 민·관합동점검 : 연8회(분기별 2회) 2,486개소 점검/50개소 위반

● 업종별 점검실적

(단위 : 개소)

총 계		이용업	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목욕장업	위생관리 용역업
대상업소	36,834	3,033	20,265	3,338	6,101	1,134	2,963
점검업소	2,486	180	1,446	356	251	125	128
위반업소	50	6	26	7	1	10	-
위 반 율	2.0%	3.3%	1.8%	2.0%	0.3%	8.0%	0%

● 위반내용

- 시설·설비기준 위반(이용업소 칸막이 미설치) 2건
- 위생관리 기준 위반(영업신고증 원본 미게시, 옥외가격표시 미게시 등) 36건
- 목욕장 및 숙박업소의 수질기준(욕조수) 위반 10건
- 폐업신고 미신고 2건

● ATP 측정기를 활용한 오염도 측정

- 541건 측정(가위·빗, 정수기코크, 정수기컵, 매트·베게·소독기 내부 등)
- 기준 초과(400 이상) 182건(기준초과율 34%)

※ 청결 관련 법규정이 없으나 ATP 기계로 측정하여 기준초과 업소에 대해 세척 후 재측정하고 위생관리 행정지도함

■ 위생처리업·위생용품제조업 수거·점검

● 위생처리업·위생용품제조업 점검실적 : (52개소 점검/3개소 위반)

(단위 : 개소, 건)

구 분	계	위생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	
			세척제제조업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대상업소	52개소	28	4	20
점검업소	52개소	28	4	20
점검건수(위반건수)	99건(3 건)	56(2)	6(0)	37(1)

- 위반내용 : 위생처리업 2건(세균수 1, 표시기준 위반 1), 위생용품 제조업 1건(표시기준 위반 1)

● 유통제품 점검실적 : 총248건 수거검사(위반사항 없음)

(단위 : 건)

합 계	세척제	1회용 손가락, 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	1회용 컵	위생종이류 (기름종이, 팩 등)
248 건	106	43	43	39	2
	행급보조제	1회용 위생종이 (냅킨, 물종이류)	일회용포크, 플라스틱컵	기타위생용품 (호일)	
	2	3	9	1	

2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 평가업소 : 이·미용업 22,041개소 (평가실시율 96%)

구 분		총 계 (단위: 개소)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대상 업소수 (A)		10,144	3,168	1,097	5,879
평가 업소수 (B)		9,693	3,059	999	5,635
평가 등급	90점 이상 (녹색등급)	2,996 (30.9%)	1,296	491	1,209
	80점 ~ 89점 (황색등급)	2,829 (29.2%)	794	350	1,685
	80점 미만 (백색등급)	3,868 (39.9%)	969	158	2,741
평가 실시율 (B/A)		96.0%	96.6%	91.1 %	95.8%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업종별로 격년으로 실시

3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 2,575개소 (부적합 93개소)

(단위 : 개소)

총 계		업무시설 (3,000㎡이상)	복합건축물 (2,000㎡이상)	공연장 (1,000석 이상)	학 원 (2,000㎡이상)	혼인예식장 (2,000㎡이상)	실내체육시설 (1,000석 이상)
대상시설	7,554	1,444	5,915	23	91	74	7
측정시설	2,575	846	1,650	11	13	48	7
부 적 합	93	48	41	0	0	2	2

● 부적합 내용

- 1개 항목 부적합(92) : 미세먼지 44개소, 이산화탄소 14개소, 포름알데히드 34개소
- 2개 이상 부적합(1) : 이산화탄소+포름알데히드 1개소

법적 미규제 기타시설 : 1,254개소(부적합 64개소)

(단위 : 개소)

시설구분 (단위 : 개소)	측정 시설	부적합 시설	부적합항목					
			포름 알데히드	미세 먼지	CO ₂	미세+ CO ₂	포알+ CO ₂	미세+ 포알
총계	1,254	64	14	13	33	2	1	1
소규모어린이집	723	33	6	4	22	1		
동주민센터	137	14	4	1	9			
체력단련장	27	0						
목욕장	39	2	2					
이미용업	51	0						
노인시설(경로당)	226	12	1	8	1	1		1
청소년시설	11	0						
장애인시설	13	1			1			
키즈카페·오락실	6	0						
고시원	0	0						
소규모공연장	4	0						
지역아동센터	17	2	1				1	

- **부적합 내용** : 측정 1,254개소 / 부적합 64개소
 - 1개 항목 부적합(60) : 이산화탄소 33개소, 포름알데히드 14개소, 미세먼지 13개소
 - 2개 이상 부적합(4) : 미세먼지+이산화탄소 2개소, 포름알데히드+이산화탄소 1개소, 미세먼지+포름알데히드 1개소

※ 소규모 어린이집(연면적430m2미만) 723개소 측정 중 33개소 부적합(부적합율 4.6%)
 이산화탄소 22개소, 포름알데히드 6, 미세먼지 4, 미세먼지+이산화탄소 1

4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 위 측 : 280명(남 84명, 여 196명), 임기 2년('13.7월 ~ '15.6월)
- 단체 상해보험 가입 : 활동 시 예상되는 안전사고 대비
- 직무교육 실시 : 공중위생 관련법령 및 활동요령(역할) 등 교육
 - 정기교육 : 9회(직무교육 1, 서울시 민관합동점검 사전 교육 8)
 - 수시교육 : 280회(자치구 자체계획 점검 사전교육)
- 민관합동점검 실시
 - 서울시 주관 : 2,486개소
 - 자치구 주관 : 33,567개소

구분	사 업 평 가
성공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 울 시 : 계획 수립 및 점검지역 선정 - 자 치 구 : 수거·점검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후관리)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위생용품 등 검사), 자치구 의약과(수질검사) ○ 민·관합동 점검을 통한 객관성 확보(명예공중위생감시원) ○ 위생지도에 대한 가시적 측정결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현장에서 세균오염도를 ATP 측정기를 통해 확인시킴으로써 업주의 긍정적 피드백 유도
부진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영세업소의 위생관리 의지 부족 ○ 숙박업소 및 목욕장 내 먹는물은 먹는물 관리법 적용을 받으나 행정처분 조항없음 ○ 근거법(공중위생관리법 등)미비로 인한 효율적 업무추진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있으나 강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없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움 - 폐업 미신고 및 멸실업소에 대한 직권말소 조항이 없어 지속적인 민원발생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및 ATP 측정 확대실시로 업소의 위생관리 수준향상 유도 ○ 숙박·목욕업소 내 먹는 물 수질기준 적용이 「먹는물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으로 변경되어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분기별 실적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 병행토록 법 개정

V

2015년 사업목표

사업목표명	목 표	비 고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지도점검률	1,200개소 이상 (자치구별 50개소 점검)	전체업소 30%이상
공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	2,000개소 (자치구별 80개소)	'14년 1,800개소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초과율	4.5% 이하	'13년 5.5% → '14년 3.6%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율	100%(24,371개소)	'15년 대상업종 : 이용·미용업

VI

세부추진계획

1

시민과 함께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명	민·관합동 구간교차 점검		
사업목표	공중위생업소 1,200개소 점검(자치구별 50개소 점검)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 점검횟수 : 연8회(분기별 2회) 이상 ○ 점검반 : 25조 75명(각 조별 3명 :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 점검방법 : 민관합동 구간교차점검(업종별 점검포에 의거 점검) ○ 점검내용 :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기기류 오염도(ATP) 측정 등 - 업종별 중점 점검사항 		
	업종	중점 점검사항	비고
	숙박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여부 - 생수병 재활용 및 침구류 재사용 여부 - ATP 측정 : 냉·온수기, 정수기 코크 등 위생상태 확인 	먹는물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수질 검사
	세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건조기 설치 여부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점검 여부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조수 및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여부 - ATP 측정 : 냉·온수기, 정수기 코크 및 찜질방 내 공동개인용품(베개 등) 위생상태 확인 	먹는물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수질 검사, 욕조수 수거검사

사업내용	이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칸막이 및 밀실 등 설치 여부 - 영업장 면적 66㎡ 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최종 지불요금 3개이상) 게시(부착) 여부 - ATP 측정 : 빗, 가위, 면도기, 전동칫트기 등 위생상태 확인 	
	미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빠기·킷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등 기타 유사 의료행위 여부 - 칸막이 점검 및 소독장비 구비 여부 - 영업장 면적 66㎡이상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 게시(부착) 여부(최종지불요금 5개이상) - ATP 측정 : 미용기구, 베드 등 위생상태 확인 	
	위생관리용역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에 대한 약제의 취급 주의사항·요령 교육여부 - 사용장비의 안전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상태 확인 	
	<p>○ 기타 : ATP 측정을 통한 위생관리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대상 : 정수기와 냉·온수기 코크, 이·미용 기구, 베게·베드 등 개인용품 - 측정방법 및 결과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치(400RLU) 초과시 현장에서 세척 후 건조하여 재측정 · 영업자에게 수치가 낮아짐을 확인시킨 후 청결관리 행정지도 		
소요예산	40,860천원		
사업명	위생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사업목표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52개소 점검(100% 점검)		
사업내용	<p>○ 점검대상 : 52개소(위생처리업 28개소, 위생용품제조업 24개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처리업 : 물수건을 살균·소독등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여 포장·공급하는 영업 - 세척제제조업 :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조리기구등을 세척하는 제제를 제조하는 영업 - 기타위생용품제조업 : 일회용의 물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및 위생종이를 제조하는 영업 <p>○ 점 검 반 : 25조 50명(각 조별 2명 :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p> <p>○ 점검방법 : 자치구 관내업소 자체점검</p> <p>○ 점검내용 : 시설 및 설비기준, 규격 및 표시기준 적정여부, 제품 수거검사</p> <p>○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p> <p>○ 기 타 : 시중 유통 중인 위생용품 수거검사</p>		
소요예산	비예산 (시중 유통제품 구입비는 자치구 예산)		

사업명	영업자 스스로 위생관리하는 자율점검 실시		
사업목표	공중위생 전체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대상 : 공중위생업소 ○ 점검주기 : 연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영업주가 자율점검표에 따라 수기작성(우편, 이메일, 팩스 등)하여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업주 스스로 목욕장 및 숙박업의 먹는물관리를 위생적으로 하도록 중점사항에 포함 시킴 ○ 시행방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제1단계》 영업자 자율점검</p> <p>자율점검표에 의한 영업주 자율 점검 실시·제출(구청 배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제2단계》 명예감시원 자율 지도점검</p> <p>대상업소 중 무작위 추출하여 명예공중감시원의 자율 지도점검 (위반업소 현장 행정지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제3단계》 자치구 지도점검</p> <p>명예감시원 자율지도 결과 문제업소 및 민원 유발업소 중점관리(행정처분 병행)</p> </div> </div>		
소요예산	비예산		
기 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인원 : 280명, 임기 2년('15년 7월 ~ '17년 6월) ○ 단체상해보험 가입 : 안전사고 대비 ○ 직무교육 : 정기 직무교육 연1회, 서울시 민관합동점검 사전교육 8회 		
소요예산	7,700천원		

2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

사업명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공표		
사업목표	이용·미용업소 100%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24,371개소(이용 2,992 / 미용 21,379) ○ 평 가 반 : 25개조 50명(각 조별 2명 : 내외부 인력으로 구성) ○ 평가방법 : 업종별 항목표에 따라 업소방문하여 현지조사 ○ 평가내용 : 업종별 26~27개 항목 평가 및 점수별 등급부여(녹색, 황색, 백색) ○ 결과공표 : 위생관리 등급을 자치구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표 		
소요예산	비예산		

3

시민에게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

사업명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목표	공중이용시설 2,000개소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업소의 25% 이상, 구별 80개소)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대상 : 업무시설(3,000㎡이상), 복합건축물(2,000㎡이상), 공연장(1,000석 이상), 학원(2,000㎡이상), 혼인예식장(2,000㎡이상), 실내체육시설(1,000석 이상) ○ 측정반 : 25조 50명(각 조별 2명 :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 ○ 측정항목 : 4개 항목 				
	항 목	미세먼지	CO	CO ₂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150 μ g/m ³ 이하	25ppm이하	1,000ppm이하	120 μ g/m ³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 측정반(25개반) 운영 - 황사 등 외부요인 발생 시 실내공기질 집중 측정·관리 - 측정대상시설에 측정일정 사전 통보 ○ 측정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 2px;">대상시설 선정 및 측정안내문발송</div> ⇒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 2px;">실내공기질측정 (측정기록표 작성)</div> ⇒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 2px;">부적합 시설 개선방안안내</div> ⇒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 2px;">2차 재측정 (부적합 시설)</div> </div> ○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 개선 권고 - 부적합 원인별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안내 - 1차 부적합시설 개선권고 이행여부 확인(재측정) <p>※법적 미규제 어린이 활동공간(소규모 어린이집 연면적 430㎡ 미만) 등 300개소(구별 12개소 이상)</p>				
소요예산	비예산				
기 타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정도검사 및 홍보물 제작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장비 정도검사 : AIRWELL PLUS 5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대상(형식승인) : 이산화탄소 - 검사기준 : 연 1회 - 검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 홍보물 제작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0부 제작(자치구별 약100부씩 배부) - 내용 : 오염물질의 종류, 발생원인 및 관리방법 등 				
소요예산	12,500천원				

4

평가계획

- **평가기간** : 연2회(상반기 중간평가로 실적관리, 하반기 총괄평가)
 - 사업 성과 지속적 모니터링, 개선방향 모색 및 자치구 피드백
- **평가방법** : 평가지표를 통한 관리
- **평가결과** : 85점 이상(우수), 70~85점(보통), 70점 미만(부진)
- **평가지표**

평가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기준	점수 등급
구조 (20)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투입(자원) 확보	사업계획 수립	10	① 종합계획수립 ② 개별계획수립 ③ 미수립	10 7 5
		예산확보	5	① 95% 이상 확보 ② 85~94% 확보 ③ 85% 미만 확보	5 3 1
		전담인력확보 a. 행정공무원 2명이상 b. 명예감시원 250명 이상	5	① a,b 모두 확보 ② 일부 확보 ③ 모두 미확보	5 3 1
과정 (50)	목표달성도(*)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지도점검 업소수	10	① 1,200개소 초과 점검 ② 800~1,200개소 점검 ③ 800개소 미만 점검	10 7 5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율	10	① 95% 이상 실시 ② 90~94% 실시 ③ 90% 미만 실시	10 7 5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정기교육, 점검 전 교육)	10	① 8회 이상 실시 ② 3~7회 실시 ③ 3회 미만 실시	10 7 5
		실내공기질 측정 시설 수	10	① 2,000개소 초과 측정 ② 1,500~2,000개소 측정 ③ 1,500개소 미만 측정	10 7 5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초과율	10	① 초과시설 4.5% 미만 ② 초과시설 4.6~5.4% ③ 초과시설 5.5% 이상	10 7 5
결과 (30)	사업 실적관리 및 결과 평가	목표달성도(*)	20	① 목표달성도 45점 이상 ② 목표달성도 35~44점 ③ 목표달성도 35점 미만	20 15 10
		2015년 사업실적 관리 a. 중간실적관리 및 피드백 b. 최종결과보고	10	① a,b 모두 실시 ② 일부 실시 ③ 모두 미실시	10 7 5
합 계				100	

주요 사업 지표		연차별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민·관합동 구간교차 점검			■			■			■		■	
	위생처리업 등 수거검사					■					■		
	영업자 자율점검		■	■	■	■	■	■	■	■	■	■	■
	명예감시원 상해보험 가입 및 직무교육						■	■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	■	■	■	■	■	■	■	■	■	
	법적 미규제 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	■	■	■	■	■	■	■	■	■	
	장비 정도검사 및 홍보물 제작 배부			■						■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			■	■	■	■	■	■	■	■	■	■	■

VII 최근 법령 개정사항 안내

- 목욕장영업의 신고 시 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 의무추가
-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강화(목욕업소 내 편의시설 및 휴식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의시설 및 휴식실의 실내가 보이도록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할 수 없도록 함)
- 이용사 및 미용사가 영업소 외에서 이용 및 미용업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추가(방송 등의 촬영에 관한 사항)
- 미용사 1명이 동일장소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을 하려는 경우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않아도 됨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미용업 시설·설비기준의 마련(미용업(일반)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따르도록 함)
- 숙박·목욕업소 내 먹는 물 수질기준을 「먹는물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
-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함

VIII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1,060천원**

총계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
61,060	48,560	12,500

■ **자체 계획수립 및 분기별 실적보고 등(자치구)**

-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3월 20일까지(금)**
- **분기별 실적보고 : 실내공기질 관리실적, 위생업소 자치구 지도점검 실적(자율점검 포함)**
 - 보고기한 : 4월·7월·10월·1월 매 첫째주까지
 - 제출서식 : 추후 별도 통지예정
- **영업소 자율점검표 제작·배부 및 홍보**
- **서울행정시스템 등록관리**
 - 등록관리
 - 영업신고 등 민원처리(신규, 변경신고, 휴업, 폐업, 지위승계신고 등)
 -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 행정처분 결과(처분확정 후 즉시 입력)
 - 공중위생업소 실태보고
 - 보고대상 : 공중위생영업소 및 공중이용시설
 - 보고주기 : 매분기(익월 5일이내)
 - 보고방법 : 서울행정시스템 전송 보고
 - 보고내용 : 업소수,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지도점검 건수 등

붙임 : 1. 공중위생업소 현황(2015.1.1현재) 1부.
2. 대상 시설별(부서별)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1부. 끝.